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가경정 제5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975,089,625	59,252,689
일반회계	1,342,767,417	40,283,023
특별회계	632,322,208	18,969,666
공기업특별회계	246,048,713	7,381,461
상수도사업	81,837,657	2,455,130
하수도사업	164,211,056	4,926,332
기타특별회계	386,273,495	11,588,205
공유재산관리	275,615,295	8,268,459
의료급여기금	5,601,196	168,036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기금운영	1,179,744	35,39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241,580	7,247
교통사업	51,140,568	1,534,217
철도건설사업	14,537,196	436,116
폐기물처리시설	8,948,536	268,456
도시재정비촉진	1,577,053	47,312
도시개발	18,582,615	557,478
기반시설 설치	7,815,712	234,471
도시재생	1,034,000	31,02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제 3 조 2016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2016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079,514천원으로 한다.

(1) 일반예비비 3,079,514천원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00천원

제 7 조 2016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1,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 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